

외국인유학생 지원센터 규정

□ 제 정 : 2013. 03. 01

□ 개 정 : 2014. 11. 01

□ 개 정 : 2017. 03. 01

제1장 총 칙

제1조(명칭)

본 센터는 외국인유학생 지원센터(이하 “본 지원센터”)라 한다.

제2조(소재)

본 지원센터는 수원대학교 내에 둔다.

제3조(목적)

본 지원센터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성공적인 유학생생활을 돕기 위해 교육과 생활 전반에 걸친 지원은 물론 유학생생활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4조(업무)

본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유학생 학습지원
2. 유학생 상담 및 인성검사 지원
3. 유학생 생활 지원
4. 유학생 취업 및 진학상담 지원
5. 기타 센터의 목적에 부합하는 다양한 지원

제5조(조직)

- ① 본 지원센터에는 센터장, 지원위원, 간사, 총무 등을 둔다.
- ② 본 지원센터는 외국대학에 지부를 둘 수 있다.

제6조(임명 및 역할)

- ① 본 센터장은 지원위원중에서 선출하며 총장이 임명한다.
- ② 센터장 유고시 지원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위원 1인을 선발, 센터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- ③ 지원위원은 학과장의 추천으로 외국인학생 지도교수 10인 내외로 국제협력처장이 구성한다.
- ④ 간사는 센터장이 임명하고, 센터장의 업무를 보좌하며 본 지원센터의 전반적인 업무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지원하고 관리한다.
- ⑤ 총무는 센터장이 임명하고, 센터의 전반적인 행정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.

제2장 활 동

제7조(학습지원)

- ① 유학생들이 학업에 잘 적응하기 위해 전공별 지도교수를 선정하여 관리 및 상담토록 한다.
- ② 유학생들의 한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 한국어 말하기 대회(봄학기)와 예능경연대회(가을학기)를 매년 개최한다.

③ 본 지원센터는 유학생들의 성공적인 교육을 위해 다양한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개발·운영한다.

제8조(상담 및 인성검사 지원)

① 본 지원센터는 다양한 상담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유학생활을 성공적으로 성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.

② 유학생들에게 심리검사 및 인성검사를 실시하여 자기이해를 돕고, 그 결과를 통해 유학생본인의 적성과 인성에 맞는 학습 및 진로를 개발할 수 있도록 상담지원한다.

제9조(생활지원)

① 유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국제학생회(SUBA)를 운영하며 학업 및 문화적응에 적극 지원한다.

② 유학생들이 원활한 숙소(교내기숙사, 교외기숙사)에 거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.

③ 본 지원센터는 유학생의 생활복지를 위해 다방면의 생활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한다.

제10조(취업 및 진학상담 지원)

① 본 지원센터는 취업 및 진학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체와의 연계를 적극적으로 도모함으로써 유학생들의 졸업이후 취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취업 지원프로그램을 개발·운영한다.

제11조(기타지원)

① 본 지원센터는 이상의 활동 이외에도 외국인 학생들의 성공적인 유학생활을 위하여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개발·운영 한다.

제3장 외국인유학생 지원센터 위원회

제12조(기능)

① 본 지원센터는 센터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·조정하기 위하여 외국인유학생 지원센터 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“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조정한다.

1. 유학생 운영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2. 유학생 유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
3. 유학생 지원센터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
4. 유학생 지원업무의 보고 및 계획에 관한 사항
5. 기타, 센터운영에 관한 중요사항

제13조(구성)

① 지원위원회는 센터장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지원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며 지원위원은 국제협력처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
③ 지원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보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제14조(회의)

① 센터장은 회의를 관장하고, 지원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.

② 지원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5조 (운영세칙)

기타 본 지원센터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제정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